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연월일 : 2003. 8.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6. 18. 행정자치부장관 허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2003. 7. 12 ~ 2003. 7. 31 / 특기할 사항없음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

第1條 (目的) 이 법은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과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界線의 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者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軍의 작전에 종군한 記者(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者(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
3. "枯葉劑後遺疑症患者"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5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다.
4.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라 함은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로 인정된 者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第5條第6項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다.

第3條 (適用對象者) 이 法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者에게 적용한다.

第4條 (適用對象者의 決定·登錄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과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가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이하 "處長"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處長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國防部長官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書類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處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⑤處長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報勳病院長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處長은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第4項의 但書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法の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但書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에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2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法の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處長은 이 法の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第5條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決定基準) ①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3. 기타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또는 연구의 결과 枯葉劑後遺症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②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疑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礙)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삭제 <2002.1.26>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질병

③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  
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枯葉劑後遺症·枯葉劑後遺疑症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  
者の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遺傳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軍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기타 臨床過程에서 발생의 원인이 枯葉劑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으로 본다.
- ⑥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隱蔽性 脊椎二分症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麻痺脊椎變病)

第6條의2(身體檢査)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症患者의 身體檢査와 第7條第8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身體檢査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3 및 第6條의4(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 第6條의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準用한다.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확인요청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등을 송부한 경우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0조와 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한 應分の 禮遇와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國民의 愛國精神涵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6條의3 (身體檢査) ①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第14號 및 第73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の 適用對象者로 될 傷痍를 입은 者의 評定과 그가 입은 傷痍程度 또는 傷痍處의 변경등으로 인한 傷痍等級을 評定하기 위하여 國家보훈처장은 身體檢査를 실시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書面審査에 의하여 傷痍等級을 評定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身體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新規身體檢査 :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에 대하여 報勳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身體檢査
2. 再審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의 評定에 異議가 있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3. 再確認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 또는 再審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評定을 받지 못한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4. 再分類身體檢査 :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 또는 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評定을 받아 이 法の 적용대상이 된 者중 본인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傷痍等級을 再分類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評定을 받지 못한 경우
2. 再審身體檢査·再分類身體檢査의 結果 傷痍等級의 變動이 없는 경우
3. 大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職權에 의한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再分類身體檢査에서의 傷痍等級再分類判定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職權에 의하여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傷痍等級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⑥身體檢査實施日 등 기타 身體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4(傷痍等級의 구분) ①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對象者의 傷痍等級은 그 傷痍程度에 따라 1級·2級·3級·4級·5級·6級 및 7級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3년 8월 18일
3. 상 정 일 자 : 제12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8.27)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 1.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손성도

-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같이 지방세(취득, 등록,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Ⅳ. 토 론 요 지 생 략

## Ⅴ. 질의답변요지 생 략

## Ⅵ. 심 사 결 과 원안가결